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유형화와 반복피해: 판결문 토픽모델링*

권준성**·한민경***

초 록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폭력적 관계로부터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통제의 핵심 기제다. 그러나 비가시적 특성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폭력은 그간 학술적·실무적 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의 양상과 반복피해에 따른 변이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 선고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 중 경제적 폭력이 포함된 제1심 판결문 284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형화된 통계 수치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폭력의 구체적 맥락과 잠재적 유형을 규명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토픽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 사건을 1차부터 3차까지 추적하여 차수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토픽 일관성 지표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1차 사건에서는 7개 유형의 경제적 폭력 양상이 도출되었으며, 토픽 수는 2차 사건에서 5개, 3차 사건에서 4개로 수렴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 공간이 물리적 영역 중심에서 온라인 및 혼합형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획득한 금융계정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침해 방식이 분화 및 회귀하는 적응적 양상을 보였다. 셋째, 3차 사건에 이르러 온·오프라인 복합 스토킹과 계획적 범행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넷째, 협박 대상이 피해자 지인에서 불특정 다수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성에 기반해 공유된 정보와 공간이 폭력적 관계로 변할 경우 폭력의 도구로 전환되는 '친밀성의 역설'을 보여주며, 이때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강압적 통제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피해자의 관계 이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강화, 비가시적 폭력의 조기 식별을 위한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체계 보완, 온·오프라인 복합형 통제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반복피해, 가정폭력, 교제폭력, 경제적 폭력, 스토킹, 토픽모델링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논문 중 일부를 재구성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jskwon@kicj.re.kr)

*** 교신저자: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m.han@police.ac.kr)

I. 서론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수사 관행은 여전히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같이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알려졌다. 2024년 2월, 전직 군인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택에 감금하거나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다(서울경제, 2024). 피해자는 약 2년간 이러한 착취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구독자 1,00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약 40억 원을 갈취당했음을 알렸다(한국일보, 2024). 가해자는 불법 촬영물 유포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관계 이탈을 막는 한편, 유흥업소 노동을 강요하고 불공정 계약을 통해 유튜브 수익을 착취했다. 이들 사건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경제적 폭력이 교묘하고 억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신체적 폭력, 성폭력, 협박, 감금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착취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를 폭력적 관계에 매이게 하는 핵심적 기제로 작동하지만, 그 구조적 위험성은 쉽게 간과되었다.

최근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폭력 중심의 가시적 폭력 기반 논의에서 벗어나 심리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에 이르는 비가시적 폭력에도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비가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전조 현상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하여, Stark(2007)는 ‘강압적 통제’ 개념을 통해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비가시적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구조적으로 관계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피해자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는 ‘자유 범죄(liberty crime)’로 재개념화된다(민윤영, 2021).

경제적 폭력은 이러한 자유 범죄의 핵심 전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UN Women(n.d.)은 경제적·재정적 폭력을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행위로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 금전에 대한 접근 차단, 학업이나 취업 금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를 가해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관계 이탈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Stark, 2007). 특히 공유 주거 공간, 상호 간의 개인정보, 공

동의 사업 또는 재산 운영 등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폭력적으로 변질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는 도리어 피해자 통제와 착취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경제적 폭력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점차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경제적 폭력이 심리적·정서적 폭력의 하위 유형이 아닌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폭력 형태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영국은 「가정학대법(Domestic Abuse Act)」을 통해 경제적 폭력을 최초로 법적 정의에 포함시켰으며 호주의 「여성폭력종식 국가계획(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에서도 경제적 폭력을 별도의 폭력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2011년 이스탄불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퇴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이 경제적 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주요 국제적 문서로 꼽힌다. 이 협약은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제적 폭력을 여성 폭력의 네 가지 핵심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도 경제적 폭력을 젠더 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한 형태로 규정하며 오늘날까지도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비록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폭력을 측정하고 있으나, 평생 및 연간 경험률이 모든 조사 연도에서 10% 미만으로 보고되어 국제 연구 결과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내 연구는 경제적 폭력을 가정폭력의 여러 하위 유형 중 하나로 간략히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적 폭력이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폭력 형태라는 국제적 논의를 반영한 심층적 연구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 기반 경제적 폭력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적 폭력을 이해하고, 그 패턴과 양상을 파악하여 개념화하기 위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이 어떤 양상과 특성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판결문은 범행의 구체적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홍승표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

법의 하나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으며, 단일 사건 중심이 아닌 동일한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1차부터 3차까지 추적하여 사건 차수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폭력의 양상이 사건의 반복에 따라 어떻게 심화되고 변이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주로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적 폭력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지속과 심화에 기여함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개념과 유형

친밀한 파트너 폭력 연구에서 경제적 폭력은 비교적 최근에 고유한 폭력 유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폭력에 대해 아직 명확히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국가·기관 등에서 각각 상이하게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서는 “강압, 사기, 또는 조작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 사용, 유지 능력을 제한하는 행위”로 경제적 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34 U.S.C. § 12291, 2022), 영국의 「가정학대법」은 경제적 폭력을 “돈, 재산, 서비스를 획득, 사용, 유지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Adams et al.(2008)은 경제적 폭력을 “피해자가 경제적 자원을 획득, 사용, 유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통제하는 행위 패턴”으로 정의한다.

경제적 폭력의 유형 또한 공통된 분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호주 연방정부 산하 국가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은 경제적 폭력을 ① ‘가계 자금에 대한 접근·결정 통제’, ② ‘취업·수입 활동 방해’, ③ ‘소득 및 자산 통제’, ④ ‘재정적 기여 거부’, ⑤ ‘양육비 지급 거부’, ⑥ ‘의도적인 재산 분할 지연’의 여섯 가지 행위로 측정한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 폭력과 금융폭력을 구분하여, 금융폭력을 경제적 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폭력은 “개인의 재정적 자유나 독립성이 통제되거나 침해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금융폭력은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직접 통제, 오용, 탈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Government of Canada, n.d.).

기관별 분류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 산하의 성평등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는 경제적 폭력을 ① ‘재산 손괴’, ② ‘재정 자원 접근 제한’, ③ ‘교육 또는 노동시장 접근 제한’, ④ ‘양육비 등 경제적 책임 불이행’, ⑤ ‘의료서비스·고용에 대한 접근 통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제적 학대 생존자 지원 단체(Surviving Economic Abuse, SEA)는 경제적 폭력을 ① ‘수입·지출·은행 계좌·청구서·대출에 대한 통제’, ② ‘교통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 ③ ‘재산 및 일상 필수품(음식, 의류) 접근 통제’, ④ ‘물건 파손’, ⑤ ‘가계 비용 분담 거부’로 구분한다. 캐나다 퀘벡주의 가정폭력 전문 지원 비영리기관인 SOS violence conjugale는 ① ‘지출과 재정 관리 통제’, ② ‘금전 절취’, ③ ‘신원 도용’, ④ ‘재정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⑤ ‘직업적 선택 통제’, ⑥ ‘피해자를 관계에 묶어두기 위한 도구로서 금전 사용’ 등으로 경제적 폭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해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유형을 도출해 왔다. 대표적으로 Adams et al.(2008)은 경제적 학대 척도의 원형(SEA)에서 ‘경제적 통제’와 ‘경제적 착취’의 두 가지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후 Adams et al.(2020)은 개정된 SEA2를 통해 이를 ‘경제적 제한’과 ‘경제적 착취’로 정제하였다. Stylianou, Postmus & McMahon(2013)은 친밀한 파트너 폭력 여성 생존자 457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폭력이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과 구별되는 독립적 구성개념임을 입증하고, 이를 경제적 통제, 경제적 착취, 고용방해의 세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Postmus, Plummer & Stylianou(2016)는 경제적 학대 척도 원형에 고용방해를 주요 요인으로 추가하여 경제적 폭력을 경제적 통제, 경제적 착취, 고용방해의 셋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지지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언주(2023)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의 경제적 폭력 또한 경제적 제한, 경제적 착취, 고용방해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적 폭력의 정의와 유형은 연구 주체 및 국가적 맥락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경제적 통제, 경제적 착취, 고용방해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폭력이 타 폭력 유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구조를 지닌 독립적 구성개념임을 방증하며, 향후 연구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의된 정의와 표준화된 측정 도구의 정립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2.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폭력의 특징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비가시성'이다. Postmus et al.(2020)은 경제적 폭력을 “보이지 않는 형태의 가정 폭력”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폭력이 타박상, 골절 등 가시적인 흔적을 남기는 반면,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재정 상태, 신용등급, 고용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외부에서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대중적 인식 부족, 연구 관심의 저조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실제로 일반 대중은 경제적 폭력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한 유형으로 널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폭력이 신체적·성적 폭력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과도 연결된다(Milne, Maury & Gulliver, 2018). 다만, 이러한 비가시성이 모든 경제적 폭력 하위 유형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폭력 유형에 따라 비가시성의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폭행·협박을 수반한 손괴나 공갈의 경우 폭력행위 자체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가 전면부에 부각되면서 그 이면에 내재된 경제적 피해의 본질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즉,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에서의 비가시성은 행위 자체가 은폐된다기보다는, 경제적 피해라는 본질이 물리적 폭력의 외양 뒤에 가려지는 형태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 근접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관계의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체적 폭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Stark, 2007). 즉, 가해자는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경제적 폭력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Stylianou, 2018). 이별 후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의 구체적 양상으로는 양육비 및 의료비 지급 거부, 공동 재산 은닉, 불공정한 재정 합의 강요, 고용방해, 법적 절차를 악용한 재정적 고갈 등을 들 수 있다(Toews & Bermea, 2017).

경제적 폭력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다른 유형의 폭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제적 학대 생존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례의 95%에서 경제적 폭력이 동반되는데, 이는 경제적 폭력이 강압적 통제의 핵심 전술로서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는 복합적 패턴의 일부임을 시사한다(Surviving Economic Abuse, n.d.). 즉,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개별 폭력행위의 단순 합이 아니라,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심리적 통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폭력의 총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려 다른 유형의 폭력에 지속 노출되게 만드는 구조적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Mellar et al.(2024)의 연구에서는 법적 절차를 이용한 폭력이 경제적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자녀를 도구화하는 행위가 심리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동시에 수반하는 등 폭력 유형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하여 관계로부터의 이탈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다(Elizabeth, 2015). 이는 ‘함정 효과’로 지칭되는데, 피해자가 금전 및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에게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통제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Surviving Economic Abuse, n.d.). 선행연구들은 여성들이 폭력적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물질적 박탈이 가해자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피해자를 해로운 관계에 효과적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Kim & Gray, 2008).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또 다른 특징은 폭행·협박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인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이미 심각한 부채가 축적되거나 신용등급이 손상된 이후에야 가해자의 경제적 행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Johnson et al., 2022). 이러한 지연된 인식은 관계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장기적 영향으로 이어진다. 특히 피해자가 관계를 떠날 때 경제적 자원이 전무하거나, 이전 파트너가 자신의 명의로 발생시킨 대규모 부채를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Christy et al., 2022), 강요된 빚은 피해자의 가용 소득을 흡수하고 저축을 고갈시키며, 수년간 신용등급을 손상시켜 주거, 공공요금, 신용, 고용 등 필수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Littwin, 2012).

3.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연구의 동향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폭력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측정도구 개발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자들은 경제적 폭력의 유병률과 영향을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축적하였다. Johnson et al.(2022)의 문헌고찰(scoping review)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발표된 경제적 폭력 영향 연구 35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확대 척도(SEA) 또는 그 변형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척도 기반 연구는 자기보고 방식의 한계로 인해 실제 피해율(prevalence rate)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Postmus et al., 2020).

피해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질적 연구도 확대되었다. Sharp-Jeffs(2015)는 영국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 여성 15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경제적 폭력이 관계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고, Toews & Bermea(2017)는 이혼 후 경제적 폭력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양육비 지급 거부, 공동 재산 은닉, 법적 절차 악용 등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Toews & Bermea(2017)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75% 이상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건강보험, 기타 기본 비용의 지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 기록이나 판결문을 활용한 경제적 폭력 연구는 태동 단계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적 폭력이 법적 기록에서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보고되는 사건 자체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기인한다(BC Law Institute, 2025). 이와 관련해 BC Law Institute(2025)는 판례 분석을 통해 가족사업체를 매개로 한 경제적 폭력 유형을 도출하면서 전체 사건 중 일부 사건만이 보고되며, 보고된 판례에서도 경제적 폭력이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적 폭력의 영향 및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Johnson et al.(2022)은 35편의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경제적 폭력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생존자의 정신건강, 재정적 안정, 신체건강, 양육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였다. 검토 결과, 경제적 폭력은 우울, 불안, PTSD 등 정신건강 문제 및 물질적 어려움과 유의하게 연관되었으며,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이후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et al., 2022). Mellar et al.(2024)은 뉴질랜드 여성 1,431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폭력과 정신건강, 그리고 재정적 결과 간의 연관성을 분석,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정신건강 문제와 재정 불안정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폭력이 다른 유형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영향을 복합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Böhret, Subramonia Pillai & Steinert(2025)은 31개국 49건의 무작위 통제 실험을 메타분석 하여 경제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경제적 폭력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경우, 경제적 폭력을 직접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다소 제한적

이다. 박언주·김효정(2015)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12명의 노동경험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폭력이 탈폭력 가능성을 제약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양면적 구성을 규명하였다. 한설아·박언주(2020)는 미국의 경제적 폭력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념과 측정, 영향,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적 맥락에서 경제적 폭력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언주(2023)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용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경제적 폭력의 범주를 고용방해, 경제적 제한, 경제적 착취로 유형화하였다.

이처럼 국내의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연구는 희소한 가운데, 피해자 면담 자료나 설문조사 등 자기보고 자료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아울러 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 판결문 연구가 일부 축적되어 있으나, 대부분 살인이나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적 폭력에 정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1) 텍스트 마이닝 분석자료로서 판결문

판결문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된다는 높은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언어적 구조와 높은 전처리 난이도로 인해 실증 분석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판결문은 전문 법률용어와 일상 언어가 공존하고 동일한 어휘라도 법적 맥락에 따라 고유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판례나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비중이 일반 텍스트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일반적인 불용어 처리 방식을 사용하거나 범용 사전학습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텍스트에 내재된 중요한 법률적 함의가 소실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판결문 자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처리와 사전학습 절차가 필요하다(Chalkidis et al., 2020).

분석 단위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픽모델링에서 분석 단위 설정은 해당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로 형사 판결문의 경우 ‘범죄사실의 인정’,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완결된 논리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문장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적 의미보다 전체 판결 내용 속에서 유기적인 맥락을 갖는다. 따라서 이를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기계적으로 분절할 경우, 사건의 인과관계와 법적 판단 사이의 내적 연관성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판결문에 내재된 범행의 양상과 맥락을 온전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Aumiller et al.(2021)은 법률 문서를 문장 수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맥락 정보가 유실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내용이 함께 유지되도록 더 큰 단위로 분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Malik et al.(2021)은 인도 법원 문서의 4만여 개 문장에 기능적 역할을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문장의 88%가 바로 앞 문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판결문 내 문장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하나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판결문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개별 판결문 전체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Carter, Brown & Rahmani, 2016; Didwania, Toshniwal & Agarwal, 2024).

2) 본 연구의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23년에 선고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의 제1심 판결문 중 경제적 폭력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는 세계보건기구(WHO, 2012)의 정의와 판결문에 명시된 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부부관계, 사실혼 관계, 내연관계, 연인관계(각 관계는 현재 및 과거의 관계를 모두 포함)로 구분하였다. 판결문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시기별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분기의 첫 월(1월, 4월, 7월, 10월)에 선고된 사건을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초 수집 시에는 범죄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수집하였으며, 기소된 죄명과 인정된 죄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고 시 확정된 죄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소기각 사건과 같이 주요 분석 변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된 판결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은 비정형 텍스트 자료로서 통계적 분석을 위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변수를 구성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응답범주를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의 자료처리 및 차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차수

는 범행발생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서로 다른 날짜에 발생한 사건은 별개의 차수로 처리하였다. 동일 날짜 내에서 시간이나 장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되, 복수의 범죄가 경합할 때는 대표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분석 단위는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설정하여 동일 가해자라 하더라도 파트너가 다르면 별개의 사례로 코딩하였다.¹⁾ 최초 자료 수집 시에는 3차 이상까지 수집하였으나, 4차 이상의 사건은 확보된 사례 수가 적어 차수별 분석 시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고 1차부터 3차까지의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²⁾ 수집된 자료의 변수 구성 및 응답범주는 <표 1>과 같다.

수집된 1,305건의 판결문 중 경제적 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경제적 폭력의 유형으로 확인한 경제적 제한, 경제적 통제, 경제적 착취, 고용방해의 성격을 갖는 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손괴 재물 소유자, 손괴 대상 물건 및 유형, 손괴 방식, 강절도 대상 물건 및 유형, 은닉 재물 유형, 사기유형 변수는 모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침해 행위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 값이 존재하는 경우 모두 '경제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폭력행위 시 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변수의 경우, 단순 폭력행위에 해당하는 '협박 또는 폭행 시 경제적 자원 요구하지 않음'을 제외하였고 '협박 시 금원 요구'와 '폭행 시 금원 요구'를 '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다. '강요된 의무 없는 일 유형' 변수에서는 '채무계약서 등 재산 관련 문서 작성 강요'와 '재물 교부 강요'만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이를 경제적 폭력에 포함하였고, 인격권이나 신체 자유, 관계 통제와 관련된 나머지 범주는 제외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한 건 이상의 범행에서 경제적 폭력행위가 확인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의 판결문 284건(수집 판결문 1,305건 중 21.8%)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통상 판결문상 범죄사실은 죄명 및 범행발생일에 따라 구분되어 열거되며, 이러한 판결문 작성례에 기초하여 죄명 및 범행발생일을 수집하였다. 예컨대 "1. 2023.10.1.경 범행, 2. 2023.10.15.경 범행이라고 적시된 경우 1차 사건은 2023.10.1., 2차 사건은 2023.10.15.에 발생한 것으로 코딩하였다.

2) 유사한 범행이 수회 반복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나 경합범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판결문에 모두 적시하지 않고 범죄일람표나 별지에 간략하게 나타냄에 따라 4차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코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 1〉 일반적 특성 및 범행 특성 관련 변수 및 응답범주

변수명	응답범주 수	응답범주(값 레벨)
범행 장소	16	당사자주거지에서
		제3자주거지에서
		피해자의영업장및근무지에서
		가해자의영업장및근무지에서
		공동의영업장및근무지에서
		주차장등일상공용공간에서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서
		숙박업소에서
		상업매장에서(유흥시설 외)
		술집이나노래방등유흥시설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노상에서
		전문직사무소에서
		우편,전화,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 통해
범행 촉발사유	10	개인적감정또는충동으로범행
		일상문제또는상호갈등으로범행
		자녀문제로범행
		이상관련문제로범행
		관계단절에대한반응으로범행
		법적책임회피를목적으로 범행
		경제적문제로범행
		집착적관계추구로범행
		가해자의음주또는정신질환문제로 범행
		성적목적으로범행
가해자 음주 여부	2	범행시가해자음주안함
		범행시가해자음주함
피해수준	5	경상의피해발생
		중상의피해발생
		치명적인피해발생
		사망
		외상후스트레스발생
신체적 폭력행위 방식	3	단발성폭력행위
		다회성폭력행위
		반복적폭력행위
오프라인 침입 경로 및 방법	7	강제로현관또는창문을개방하여무단침입
		문이열린틈에무단침입
		손괴되거나시정되지않은현관또는창문을통해무단침입
		열쇠사용또는비밀번호입력을통해무단침입
		의도적으로소란을피워문을열게하여무단침입
		피해자또는경비원을속여무단침입
피해자를협박하여문을열게한뒤무단침입		
오프라인 침입 장소	3	피해자의주거지에무단으로침입
		피해자의직장또는사업장에무단으로침입
		피해자지인의주거지에무단으로침입

변수명	응답범주 수	응답범주(값 레벨)
정보통신망 침해 도구	2	피해자의기기를사용해정보통신망침해
		피고인의기기를사용해정보통신망침해
정보통신망 침해 방법	3	자동로그인방식을통해계정침입
		미리알고있던계정정보입력
		미리등록해둔가해자의생체인식입력
정보통신망 침해 대상	4	피해자의계정에접근및침해
		피해자의업무시스템에접근및침해
		피해자의금융계좌에접근및침해
		피해자소유기기에저장된개인자료에접근및침해
온라인 또는 디지털성범죄 유형	5	성적목적으로사진또는동영상촬영
		성적자료전송
		성적자료소지
		성적촬영물이용협박또는공갈
		피해자대상성적촬영물을온라인상에게시
협박 또는 공갈 유형	14	피해자에대한생명·신체위협협박
		피해자의재산손괴협박또는공갈
		불특정다수대상사생활공개협박또는공갈
		피해자지인대상사생활공개협박또는공갈
		불특정다수대상자료공개협박또는공갈
		피해자지인대상자료공개협박또는공갈
		가해자지인대상자료공개협박또는공갈
		가해자본인의자해협박또는공갈
		피해자의지인에대한신체생명위협또는공갈
		공동의지인대상자료공개협박또는공갈
		피해자의직장에서사생활공개협박또는공갈
		피해자의직장에서자료공개협박또는공갈
		피해자를괴롭히겠다고협박또는공갈
		양육권등자녀관련협박또는공갈
협박 또는 공갈 방식	5	대면상황에서협박또는공갈
		협박또는공갈메시지전송
		통화중협박또는공갈
		인쇄중이부착또는편지를통해협박또는공갈
		SNS또는메신저에글을등록하여협박
협박 또는 공갈시 위협수단	2	별도의위협수단없이협박또는공갈
		위험한물건을사용하여협박또는공갈
협박 자료 내용	5	성관계동영상을협박또는공갈자료로사용
		성관계외성적자료또는음란대화를협박자료로사용
		피해자의신체사진또는동영상을협박자료로사용
		불륜또는외도증거를협박자료로사용
		위험한물건또는자해사진을협박자료로사용
손괴재물 소유자+	2	피해자의재물손괴
손괴대상 물건 및 유형+		공동의재물손괴
		휴대전화손괴
		차량손괴
		집안가구또는전자기기손괴
		영업장물건손괴

변수명	응답범주 수	응답범주(값 레벨)
손괴대상 물건 및 유형†	8	차량열쇠손괴
		의류또는지갑손괴
		손잡이나창문등잠금장치손괴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손괴
손괴 방식†	2	신체를사용하여손괴
		위험한물건을사용하여손괴
강절도 대상 물건 및 유형†	6	휴대전화절취
		차량열쇠절취
		현금성재물절취
		휴대전화강취
		차량열쇠강취
은닉 재물 유형†	2	휴대전화은닉
		차량열쇠은닉
사기유형†	3	투자또는사업명목금원편취사기
		피해자거래수단악용사기
		허위사정빙자금원편취사기
위조 또는 도용유형†	3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명의또는계정도용
폭력행위 시 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	3	협박또는폭행시경제적자원요구하지않음
		협박시금원을요구
		폭행시금원을요구
강요된 의무 없는 일 유형†	9	영상또는사진촬영강요
		타인에게연락을하도록강요
		거주지밖으로나가도록강요
		채무계약서등재산관련문서를작성하도록강요
		탈의하도록강요
		재물을교부하도록강요
		피해자와타인과의관계에대해강요
		재회강요
휴대전화등기기비밀번호강요		

- 주: 1. 실제 등록된 사용자 정의 사진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응답범주는 피어쓰기하지 않음.
 2. 휴대전화나 차량열쇠 등의 은닉은 피해자의 이동이나 소통을 제한하는 통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도 하나, 피해자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직접 차단하여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영국의 피해자 지원 단체인 Surviving Economic Abuse가 ‘교통 및 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를 경제적 폭력의 유형으로 분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폭력의 범주에 포함함.
 3. † 표시된 변수는 경제적 폭력 데이터 선정 기준으로 활용됨.

2. 분석 방법 및 분석 절차

1)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의 이론적 개념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계량적 방법론으로, 자연어처리 기술과 통계적 기법을 융합하여 데이터 내의 잠재적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eldman & Sanger, 2006). 토픽모델링은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의 핵심 기법의 하나로, 문서 집합에 내재된 추상적인 주제를 통계적 추론을 통해 찾아내는 확률적 생성 모형이다. 이 기술은 초기 잠재 의미 분석(Latent Semantic Analysis, LSA)에서 시작하여 확률적 잠재 의미 분석(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PLSA)을 거쳐, 현재 가장 널리 활용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으로 발전해왔다(Blei, 2012).

본 연구에서 활용한 LDA는 디리클레 사전분포를 도입하여 기존 모형들의 과적합 문제와 해석의 모호성을 극복한 베이지안 확률 모형이다(Blei, Ng & Jordan, 2003). LDA의 핵심 원리는 각 문서가 여러 주제의 확률적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는 다시 특정 단어들의 확률적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자는 관찰된 단어들의 구성을 통해 문서가 생성된 과정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해당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각 주제가 어떤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추론하게 된다.

LDA 모형을 통해 잠재된 주제를 추정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근사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변분 추론(Variational Inference)과 깁스 샘플링(Gibbs Sampling)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깁스 샘플링을 채택하였다. 변분 추론이 계산 속도에 강점이 있다면, 깁스 샘플링은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해 실제 분포에 더 근접한 정밀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Griffiths & Steyvers, 2004).

2)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모형 최적화 절차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알고리즘은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기에 언제나 적절한 주제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기계적인 분류가 텍스트의 맥락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Grimmer & Stewart,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델링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 절차를 수행하였다.

(1)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어 선별

법률 판결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구체적인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일 죄목 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범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판결문에 서술된 행위 유형을 식별하고 이를 복합명사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자 정의 사전을 구축하여 복합명사가 하나의 분석 단위로 온전히 인식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불용어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어 정보량이 낮은 단어를 제거하고 핵심 키워드만을 선별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예비분석 결과, 저(低)빈도어 제거 효과와 정보 보존 간의 균형점이 되는 0.50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TF-IDF 가중치 합이 0.50 미만인 단어와 실질적인 의미 전달력이 낮은 2글자 미만의 형태소를 일괄 제거하여 분석자료의 품질을 확보하였다.

(2) 모형 최적화 및 하이퍼파라미터 설정

토픽모델링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검토를 결합한 단계적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적정 토픽 수(k)와 하이퍼파라미터(α, β)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혼란도(Perplexity) 지표가 갖는 해석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토픽의 의미적 응집도를 측정하는 일관성 지표(coherence score, CV 및 UMass)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³⁾ 이를 통해 각 판결문이 특정 주제에 집중되면서도 해석 가능한 5~15개의 주요어(keywords)로 구성되도록 모형을 최적화하였다.

(3) 최종 모형 추정 및 검증

최종 모형의 추정은 깃스 샘플링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수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깃스 샘플링 결과가 수백 회 반복된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Griffiths & Steyvers(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1,000회 반복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통계적 분석이 가질 수 있는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 간 교차 검증을 거듭하였다.⁴⁾ 각 토픽의 상위 7개 단어

3) 파라미터 탐색을 위해 UMass와 CV를 기준으로 사전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문서별 토픽 혼잡이 과도해지거나 변별력이 저하되는 구간을 배제하고, 토픽 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α 는 0.015~0.025, β 는 0.02~0.03으로 설정하였다.

4) 구체적으로, 주저자가 1차적으로 토픽명과 해석안을 제안하고 교신저자가 각 토픽의 주요어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토픽명의 적절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토픽명이

와 대표 문서를 검토하여, 추출된 토픽이 실제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의 쟁점과 특성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수행에는 넷마이너(NetMiner 5)를 이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각 차수별로 독립적인 LDA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 접근은 차수별 범행 양상의 고유한 토픽 구조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나, 각 모형이 구성하는 잠재 공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차수 간 토픽의 출현이나 소멸을 시계열적 인과관계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방법론적 제약이 수반된다. 아울러 판결문에 기록된 사건은 실제 발생한 폭력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므로 차수 간 비교 결과는 이러한 자료적 한계를 전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차수별 독립 모형 접근을 채택한 것은, 차수마다 표본 크기와 범행 양상의 구성이 상이하여 각 차수의 고유한 토픽 구조를 최적화된 하이퍼파라미터 하에서 독립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차수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IV. 분석결과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적정 토픽 수 결정과 토픽의 명명은 서로 다른 방법론적 접근에 기초한다. 적정 토픽 수는 일관성 지표(CV 및 UMass) 기반의 정량적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⁵⁾ 한편, 토픽 명명에 있어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알고리즘은 단어들의 공출현(Co-occurrence) 패턴을 토대로 잠재 주제를 군집화할 뿐, 해당 주제의 사회적·맥락적 의미까지 도출하지는 못하므로, 각 토픽의 상위 핵심어와 대표 문서를 검토하여 범행 양상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자의 정성적 해석에 기초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1차 사건에서는 총 7개의 토픽($n=284$)이 도출되었으며, 2차 사건에서는 5개의 토픽($n=137$), 3차 사건에서는 4개의 토픽($n=110$)이 도출되었다.⁶⁾ 1차 사건의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나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원데이터 재검토를 통해 최종 조율하였다.

5) 적정 토픽 수(k) 결정을 위해 하이퍼파라미터와 일관성 지표(CV 및 UMass)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는 모든 사건에서 $\alpha=0.025$, $\beta=0.02$ 가 가장 안정적인 값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차 사건에서는 CV에서 $k=3$ 과 $k=7$ 이 유사했으나 UMass에서 $k=7$ 이 더 우수하여 $k=7$ 을 채택하였다. 2차 사건에서는 두 지표 모두 $k=5$ 에서 안정적인 값을 보여 $k=5$ 를 선택하였으며, 3차 사건에서는 $k=4$ 가 CV와 UMass 모두에서 최고점을 형성하여 $k=4$ 를 확정하였다.

2)와 같다.

〈표 2〉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토픽모델링 결과: 1차 사건

토픽명	주요어1	주요어2	주요어3	주요어4	주요어5	주요어6	주요어7
성적촬영 물이용·금 원갈취형	협박시금 원을요구	성적촬영 물이용협 박또는공 갈	피해자지 인대상사 생활공개 협박또는 공갈	협박또는 공갈메시 지전송	성관계동 영상을협 박또는공 갈자료로 사용	대면상황 에서협박 또는공갈	허위사정 빙자금원 편취사기
대면위협· 흥기사용 협박형	대면상황 에서협박 또는공갈	위험한물 건을사용 하여협박 또는공갈	피해자에 대한생명· 신체위해 협박	가해자본 인의자해 협박또는 공갈	관계단절 에대한반 응으로범 행	범행시가 해자음주 함	집안가구 또는전자 기기손괴
관계집착· 오프라인 침입형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	집착적관 계추구로 범행	손잡이나 창문등창 금장치손 괴	강제로현 관또는창 문을개방 하여무단 침입	손괴되거나 정지않은 현관또는창 문을통해 무단침입	위험한물 건을사용 하여손괴	현금성재 물절취
일상갈등· 손괴형	일상문제 또는상호 갈등으로 범행	휴대전화 손괴	다회성 폭력행위	경상의피 해발생	당사자주 거지에서	집안가구 또는전자 기기손괴	피해자의 재물손괴
신원도용· 주거지형	명의또는 계정도용	당사자주 거지에서	위조문서 행사	문서위조	의류또는 지갑손괴	반복적폭 력행위	일상문제 또는상호 갈등으로 범행
음주·업무 방해형	범행시가 해자음주 함	피해자의 영업장및 근무지에 서	영업장물 건손괴	집안가구 또는전자 기기손괴	위험한물 건을사용 하여손괴	당사자주 거지에서	집착적관 계추구로 범행
온라인침 해·금원갈 취형	피고인의 기기를사 용해정보 통신망침 해	미리알고 있던계정 정보입력 사기	투자또는 사업명목 금원편취 사기	피해자의 계정에접 근및침해	피해자거 래수단악 용사기	상업매장 에서	경제적문 제로범행

주: 주요어는 앞서 제시된 응답범주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 실제 등록된 사용자 정의 사건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띄어쓰기하지 않음.

6) 이때 표본 크기 감소가 토픽 수 감소에 직접 기여하여 모델 품질 저하를 일으킨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표본 수가 가장 적은 3차 사건의 경우 k=9에서 CV가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더 많은 토픽 추출이 가능하였으나, k=4가 CV와 UMass 모두에서 최적점을 형성하여 채택되었다. 아울러 차수별 토픽 일관성 지표를 살펴보면, CV는 1차 0.431, 2차 0.685, 3차 0.791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상승하였고, UMass 역시 1차 -12.152, 2차 -5.913, 3차 -6.022로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토픽 수가 감소하면서도 토픽당 키워드 수는 모든 차수에서 7개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토픽 수 감소는 데이터 부족에 따른 모델 품질 저하가 아니라, 사건이 반복될수록 특정 유형의 범행이 지속되면서 행위 양상이 정형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적촬영물이용·금원갈취형’은 성적 영상이나 사생활 정보를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갈 유형이다. 가해자는 성관계 영상 등 민감한 촬영물을 유폐하겠다고 위협하며, 특히 피해자의 지인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양상이 빈번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로 문자나 메시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나, 직접 만나 협박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허위 사정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가 수반되기도 한다.

‘대면위협·흥기사용협박형’은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협박과 공갈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가해자는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유형은 대체로 관계 단절에 대한 반응으로 음주 상태에서 촉발되는데, 가구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괴 행위가 수반되기도 한다.

‘관계집착·오프라인침입형’은 피해자의 거주 공간에 대한 무단침입하는 행위와 손괴 행위 중심의 유형이다. 주로 관계 유지에 대한 집착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며, 문고리나 창문 등 잠금 시설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현관이나 창문을 열어 침입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미 파손되었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도 하며, 침입 과정에서 흥기를 사용하여 재물을 파손하거나, 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갈등·손괴형’은 주로 피해자와의 일상 문제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다. 가해자는 휴대전화, 가구, 전자기기 등 생활용품을 손괴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일상갈등·손괴형’에 따른 범행은 주로 당사자의 거주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원도용·주거지형’은 명의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행위가 핵심인 유형으로, 거주지에서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다. 옷이나 지갑 등에 대한 손괴나 반복적인 폭력 행사가 동반되기도 하며, 일상 문제 또는 상호 갈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음주·업무방해형’은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관계에 대한 집착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관계집착·오프라인침입형’과 유사하나, 피해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의 가구나 전자기기 등의 물품을 손괴하는 양상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거주 공간 내 물품을 손괴하는 ‘관계집착·오프라인침입형’과 차이를 보인다. ‘음주·업무방해형’에 해당하는 손괴 행위 시 흥기가 동원되기도 한다.

‘온라인침해·금원갈취형’은 사전에 파악한 계정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망 무단 접속이 주된 범행 방식인 유형이다. 투자나 사업을 빙자한 금전 편취 갈

은 사기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거래 수단을 악용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상업매장이 범행 장소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관계에 대한 강한 집착보다는 경제적 문제가 주된 범행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2차 사건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토픽모델링 결과: 2차 사건

토픽명	주요어1	주요어2	주요어3	주요어4	주요어5	주요어6	주요어7
사생활 공개협박·금원갈취형	협박시금원 요구	피해자지인 대상사생활 공개협박또 는공갈	협박또는공 갈메시지전 송	공동의지인 대상자료공 개협박또는 공갈	피해자지인 대상자료공 개협박또는 공갈	통화중협박 또는공갈	성적촬영물 이용협박또 는공갈
성적촬영물 이용·금원 갈취형	성적촬영물 이용협박또 는공갈	협박시금원 요구	협박또는공 갈메시지전 송	직접촬영또 는수집한자 료를활용	성관계동영 상을협박또 는공갈자료 로사용	불특정다수 대상자료공 개협박또는 공갈	대면상황에 서협박또는 공갈
흥기사용손 괴·주거지 형	집안가구또 는전자기기 손괴	위험한물건 을사용하여 손괴	당사자주거 지에서	주변에있던 위험한물건 사용	일상문제또 는상호갈등 으로범행	신체사용폭 력행위	휴대전화손 괴
관계집착· 온라인침해 형	집착적관계 추구로범행	피해자의계 정에접근및 침해	피고인의기 기를사용해 정보통신망 침해	미리알고있 던계정정보 입력	손잡이나창 문등잠금장 치손괴	강제로현관 또는창문을 개방하여무 단침입	피해자의재 물손괴
업무방해· 금원갈취형	피해자의영 업장및근무 지에서	영업장물건 손괴	피해자거래 수단악용사 기	투자또는사 업명목금원 편취사기	상업매장에 서	위험한물건 을사용하여 폭행	위험한물건 을사용하여 손괴

주: 주요어는 앞서 제시된 응답범주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 실제 등록된 사용자 정의 사건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피어쓰기하지 않음.

‘사생활공개협박·금원갈취형’은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공갈 중심의 유형이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양측이 공유하는 지인을 대상으로 사적 정보나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주로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통화를 통해 협박이 이루어진다. 이때 성적 영상물을 활용한 위협이 수반되기도 한다.

‘성적촬영물이용·금원갈취형’은 1차 사건에 이어 재출현한 유형으로, 성적 영상물을 수단으로 삼아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공갈 유형이다. 활용되는 촬영물은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확보한 성적 촬영물이 대부분이며, 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자료 유포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한다. 위협은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나 직접 대면하여 협박이나 공갈이 수행되기도 하

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복합적 양상이 관찰된다.

‘흥기사용손괴·주거지형’은 주로 흥기를 동원하여 기물을 손괴하는 유형이다. 이때 흥기는 대체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확보한 물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구와 전자기기가 주된 손괴 대상으로 나타난다. 범행 장소는 주로 당사자의 거주 공간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일상적 갈등이나 마찰이 범행의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행위가 수반되기도 하는데, 주로 신체를 이용한 폭력이 다수다.

‘관계집착·온라인침해형’은 대부분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 감정에서 비롯되는 범행 유형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기기를 통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이나 금융계좌에 접근하며, 사전에 파악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침해는 온라인에 한정되지는 않고, 오프라인에서 현관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어 무단 침입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고리나 창문 등 잠금 시설이나 의류, 지갑 등 소지품에 대한 손괴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업무방해·금원갈취형’은 주로 피해자의 영업장 및 근무지에서의 재물손괴와 사기를 통해 금원을 탈취하는 유형이다. 피해자 명의의 결제 수단을 악용하거나 투자 또는 사업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주로 나타나며, 흥기를 동원한 폭행·손괴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어 <표 4>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3차 사건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다회성폭력·흥기사용손괴형’은 물리적 폭력행위와 재물손괴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폭력행위가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신체를 이용한 폭행과 흥기를 동원한 손괴 행위가 주된 양상이며, 흥기의 경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확보한 주변 물건을 활용하는 우발적 특성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손괴 대상은 휴대전화,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 물품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계집착·온라인스토킹형’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 감정이 범행의 주된 촉발 요인인 유형으로, 스토킹과 손괴 행위가 주된 범행 양상으로 나타난다. 스토킹의 경우 온라인 중심의 행위와 오프라인 중심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출현한다.⁷⁾ 피해자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주요 피해 장소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흥기를 활용한 위협 행위가 수반되기도 한다.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 도달 행위를 가리킨다.

〈표 4〉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토픽모델링 결과: 3차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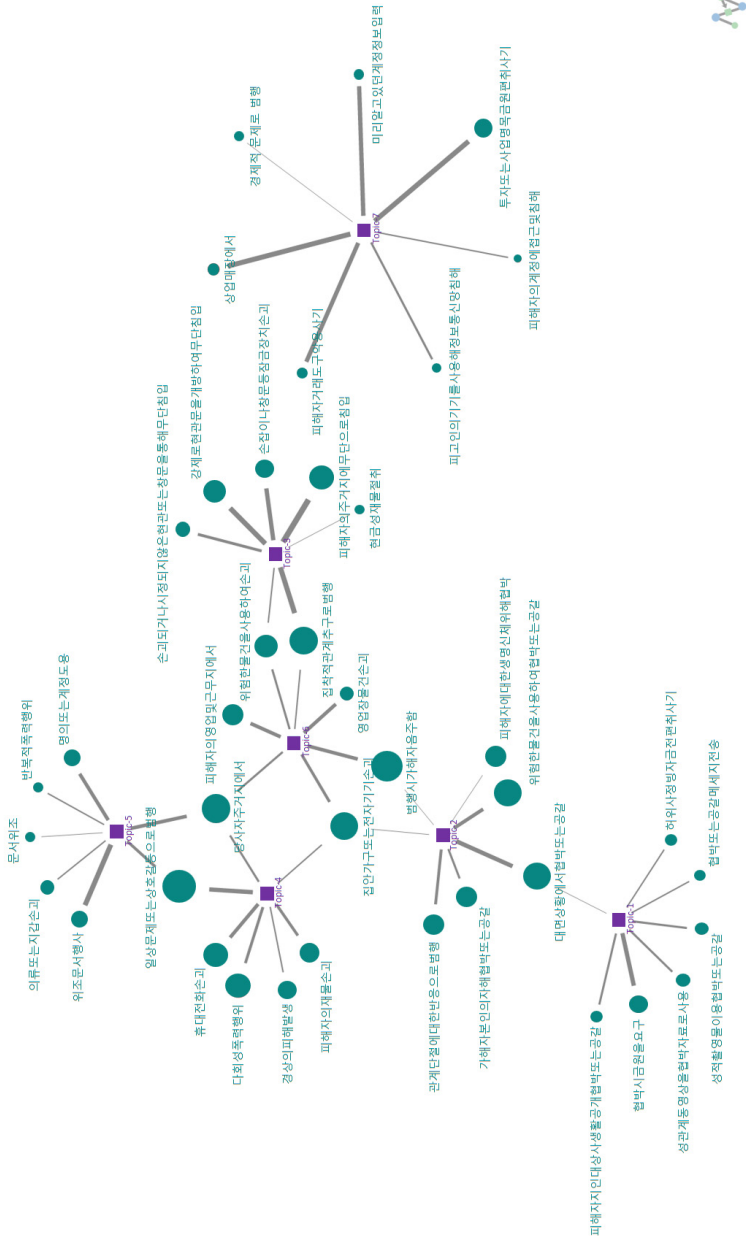
분류 (토픽명)	주요어1	주요어2	주요어3	주요어4	주요어5	주요어6	주요어7
다회성 폭력·흥기 사용손괴형	다회성 폭력행위	피해자의 재물손괴	신체사용 폭력행위	위험한물 건을사용 하여손괴	주변에있 던위험한 물건사용	휴대전화 손괴	집안가구 또는전자 기기손괴
관계집착· 온라인스토 킹형	집착적관 계추구로 범행	스토킹행 위[대]목위 반	피해자의 재물손괴	스토킹행 위[가]목위 반	피해자의 영업장및 근무지에 서	위험한물 건을사용 하여협박 또는공갈	범행을위 해사전에 준비한위 험한물건 사용
성적촬영물 이용협박· 금원갈취형	협박시금 원을요구	성적촬영 물이용협 박또는공 갈	성관계동 영상을협 박또는공 갈자료로 사용	협박또는 공갈메시 지전송	불특정다 수대상자 료공개협 박또는공 갈	피해자지 인대상사 생활공개 협박또는 공갈	재물을 교부하도 록강요
온라인침해 ·금원갈취 형	미리알고 있던계정 정보입력	피해자의 계정에접 근및침해	피해자거 래수단악 용사기	투자또는 사업명목 금원편취 사기	피고인의 기기를사 용해정보 통신망침 해	상업매장 에서	허위사정 빙자금원 편취사기

주: 주요어는 앞서 제시된 응답범주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 실제 등록된 사용자 정의 사전의 형태로 제시하기 위해 띄어쓰기하지 않음.

‘성적촬영물이용협박·금원갈취형’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민감한 영상물을 수단 삼아 위협하는 것으로, 1차 사건부터 일관되게 출현하는 유형이다. 3차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2차에서 별도로 구분되었던 피해자 주변인 대상 사생활 폭로 위협이 동일 유형 내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자료 유포 위협과 피해자 지인을 겨냥한 사생활 공개 위협이 금전 획득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복합적으로 구사되는 전략적 발전 양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특성과 대응 방식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위협 수단을 선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3차 사건에서는 ‘재물을 교부하도 록 강요’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여 위협의 강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침해·금원갈취형’은 디지털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과 사기를 통한 금전 탈취가 주된 유형이다. 디지털 계정침해는 사전에 파악한 피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불법 접속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며, 사기 수법은 피해자 명의의 결제 수단 악용, 투자나 사업을 명목으로 한 금원 편취, 거짓 사정을 내세운 금전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은 각각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1차 사건부터 3차 사건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재산범죄 1차 사건 토픽모델링 결과 도식화

V.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유형을 뜻하는 최적 토픽 수는 1차 7개에서 2차 5개, 3차 4개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한 데 반해, 토픽 일관성 지표(CV)는 1차 0.431에서 2차 0.685, 3차 0.791로 지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반복피해가 진행될수록 초기의 다양한 범행 양상이 특정 패턴으로 수렴됨을 의미하며, 범행 양상의 수렴은 가해자가 범행의 반복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법을 학습하여 범행을 정형화해 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피해자의 신고, 회피, 차단 등 대응 양상에 따라 범행 방식과 전략을 재구성하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행 공간이 물리적 영역에서 온라인 및 혼합형으로 전환되었다. 범행 공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각 토픽의 키워드를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으로 분류하고, 두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1차 사건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71.4%, 혼합형이 28.6%였으나, 2차 사건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혼합형이 각각 40%, 순수 온라인 유형이 20%로 나타났다. 3차 사건에서는 혼합형이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각각 25%를 나타내어 두 공간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 강화되었다.

둘째, 디지털 침해 방식에서 분화와 회귀를 통한 적응 양상이 확인되었다. 1차 사건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해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2차 사건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두 방향으로 분화되었는데, 하나는 거래 수단 악용이 영업장 손괴 및 폭행과 결합되어 피해자의 생계 기반을 직접 공격하는 형태라면, 다른 하나는 디지털 계정침해가 주거침입 및 손괴와 결합되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복합 침해 형태였다. 그러나 3차 사건에서는 1차 사건과 거의 동일한 ‘계정침해·금원갈취’ 유형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가해자들이 2차 사건에서 다양한 침해 전략을 실험한 후, 결국 디지털 침해를 통한 금원 갈취가 가장 효과적임을 학습하고 원래 방식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3차 사건에 이르러 스토킹 유형과 계획적 범행 양상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관계집착·온라인스토킹형’으로, 1차 사건 및 2차 사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스토킹 범행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 형태와 오프

라인에서의 접근 및 감시 행위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관계집착·온라인스토킹형’에서는 협박에 사용한 흥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계획적 범행의 양상도 관찰되었다.

넷째, 경제적 폭력을 수반한 협박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1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지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공개 협박과 가해자 본인의 자해 협박이 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2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지인뿐 아니라 공동의 지인, 나아가 불특정 다수까지 협박 대상이 확장되었다. 3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지인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 하나의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복합 전략이 등장하였고, 재물 교부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형태가 추가되어 압박의 수위가 심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연구의 의의와 함의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반복피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행 패턴의 진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내재된 ‘친밀성의 역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정상적인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폭력적 관계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심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사자 주거지 또는 피해자의 영업장·근무지와 같이 친밀함을 공유하던 공간이 범행의 무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획득한 계정 정보가 정보통신망 침해와 금원 갈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양상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모든 차수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공간과 정보가 관계가 변질된 후에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강압적 통제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온라인 계정침해,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통제 기법은 단순한 새로운 폭력 수단의 추가가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을 붕괴시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가해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의 확립을 의미한다(Dragiewicz et al., 2018). 특히 3차 사건에서 확인된 계획된 협박 및 온·오프라인 복합 스톱킹의 등장은 기술 매개 통제가 구체화하는 양상을 잘 드러낸다.

셋째, 협박 대상의 확대는 Pence와 Paymar(1993)가 제시한 ‘고립’ 전술이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2차 사건부터 피해자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생활 공개 협박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와 평판을 무기 삼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Stark(2007)의 미시규제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피해자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을 세밀하게 제약하는 통제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정교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 대응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폭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계정정보 침해나 피해자 명의 거래 수단 악용 등의 행위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짐에도, 실무상 민사상 분쟁이나 단순 재산범죄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관계 이탈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권력 및 통제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력적 관계로부터 벗어남과 더불어 관계 종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생계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재정 및 부채 상담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국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에서는 Good Shepherd Australia New Zealand와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Financial Independence Hub가 경제적 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재정 상담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d.), 영국에서는 자선단체 Money Advice Plus와 Surviving Economic Abuse가 협력하여 경제적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부채 상담 서비스(Centre of Excellence for Debt and Economic Abuse Services, CEDEAS)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재정적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rviving Economic Abuse, n.d.).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경제적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과 같은 비가시적 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현장 대응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폭력은 다양한 범죄 유형과 중첩되어 나타났으며, 범행의 반복 과정에서 점차 교묘하고 계획적인 양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행 대응체계는 물리적 상황에 기반하므로 가시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현재 경찰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관련 112 신고 출동 시 활용하고 있는 ‘긴급입시·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의 평가 문항은 신체적 폭력, 일상생활 통제, 음주·약물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폭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폭력 등 비가시적 폭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거듭됨에 따라 진화 및 결합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복합형 통제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범행 공간에서 혼합형 양상은 1차 사건 28.6%에서 3차 사건 50%로 증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폭력이 물리적 폭력의 연장선이자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의 디지털 증거는 훼손 및 삭제 위험이 높아 피해자들이 과도한 입증 부담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 및 접근에 한정하지 않고 전기통신을 악용한 피해자 활동 감시, 피해자 관련 허위정보 게시·유포,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온라인상 접촉 시도 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의 계정정보, 행동 패턴, 사회적 관계망 등 상당한 사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단발적 행위 만으로도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의의 및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판결문 자료는 형사사법체계

에 포착된 사건만을 다루므로, 형사사법체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법원 단계 이전에 제외된 다층적인 암수범죄가 존재한다. 예컨대, 경찰 단계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특성으로 인한 미신고, 현장중결, 불입건, 불송치 등으로 법원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있으며, 송치 후 기소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진술 축소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판 절차를 거친 판결문 기록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약식명령이나 가정보호처분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 기록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는 상대적으로 피해 결과가 명시적이고 중한 사건 기록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자료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의 범행 차수 분석은 3차로 제한되었다. 토픽모델링 분석의 경우 다량의 텍스트 기록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는데, 사례 수의 제한으로 인해 범행 양상의 변화를 3차 사건 이후까지 살펴보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차수별로 독립적인 LDA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 접근법은 차수별 범행 양상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나, 토픽 수(k)와 표본 크기(n)가 차수마다 상이하여 각 모형이 구성하는 잠재 공간이 동일하지 않다는 방법론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차수 간 토픽의 출현이나 소멸을 시계열적 인과관계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차수별 비교 결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차수를 공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차수 간 변화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복잡한 질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질적 맥락을 포착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은 크게 고용방해, 경제적 제한, 경제적 착취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고용방해와 경제적 착취 방식은 포착되었으나, 생활비 통제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경제적 제한 행위는 명확하게 범죄를 구성하기 어려워 판결문에 충분히 적시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피해자 면담, 상담 기록 분석 등 질적 연구를 통해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교묘한 형태의 경제적 통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확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3년 각 분기의 첫 월에 선고된 제1심 판결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판결문 수집 기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약식명령서와 가정보호사건 기록

에 대한 접근 및 분석도 모색할 것이 권장된다. 약식명령서는 기재 내용이 제한적이거나 다량의 사건을 포괄할 수 있어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의 전반적인 발생 양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가정보호사건 기록은 현재 비공개되고 있으나, 비식별화 처리를 전제로 한 연구 목적의 접근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다년도에 걸쳐 수집된 판결문과 형사 사법기관의 다양한 기록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초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시간적 진화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인 피해자 본인을 직접 향한 경제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나 주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 내 경제적 폭력이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 주변인에 대한 위협, 사회적 지지망 파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결문 분석과 함께 피해자 심층 면담, 상담·의료 기록, 경찰 112 신고자료 등을 병행하는 다층적 자료 및 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민윤영(2021). “가정폭력범죄로서 강압적 통제의 법적 수용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31-67.
- 박언주(2023).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경제적 폭력의 범주”. 한국여성학, 제39권 제4호, 67-103.
- 박언주·김효정(2015). “가정폭력피해여성의 노동경험에 관한 연구: 경제적 폭력의 경험과 탈폭력 가능성 확장의 양면적 구성”.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제2호, 71-106.
- 한설아·박언주 (2020). “경제적 폭력에 관한 가정폭력 연구의 동향과 함의: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호, 307-336.
- 홍승표·임선영·고으뜸·홍성초·김정운·임중연(2020). “판결문 분석을 통한 범죄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6호, 209-230.
- Adams, A. E., Greeson, M. R., Littwin, A. K. & Javorka, M.(2020). The revised scale of economic abuse (SEA2):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testing of an updated measure of economic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Psychology of Violence*, 10(3), 268-278.
- Adams, A. E., Sullivan, C. M., Bybee, D. & Greeson, M. R.(2008). Development of the scale of economic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14(5), 563-588.
- Aumiller, D., Almasian, S., Lackner, S. & Gertz, M.(2021). Structural text segmentation of legal documents. *In Proceedings of the Eigh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ICAIL'21)* (pp. 2-11). ACM.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23). Partner economic abuse. *Personal Safety Survey User Guide*, 2021-22.
- Blei, D. M.(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Blei, D. M., Ng, A. Y. & Jordan, M. I.(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öhret, I. A., Subramonia Pillai, V. & Steinert, J. I.(2025). What works

in reducing economic violence against women: Global evidence fro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British Columbia Law Institute(2025). *Study paper on understanding economic abuse through family businesses in family law*. Vancouver: British Columbia Law Institute.

Carter, D. J., Brown, J. & Rahmani, A.(2016). Reading the High Court at a Distance: Topic Modelling the Legal Subject Matter and Judicial Activity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1903-2015.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39(4), 1300-1354.

Chalkidis, I., Fergadiotis, M., Malakasiotis, P., Aletras, N. & Androutsopoulos, I.(2020). LEGAL-BERT: The Muppets straight out of law school. In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EMNLP 2020* (pp. 2898-2904).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Christy, K., Welter, T., Dundon, K., Valandra & Bruce, A.(2022). Economic abuse: A subtle but common form of power and contro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2), NP473-NP499.

Council of Europe. (2011).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CETS No. 210). Istanbu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2022).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 Australian Government.

Didwania, K., Toshniwal, D. & Agarwal, A.(2024). *Unveiling Themes in Judicial Proceedings: A Cross-Country Study Using Topic Modeling on Legal Documents from India and the UK*. arXiv preprint, arXiv:2406.00040.

Douglas, H.(2018). Legal systems abuse and coercive control.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8(1), 84-99.

Dragiewicz, M., Burgess, J., Matamoros-Fernández, A., Salter, M., Suzor, N. P., Woodlock, D. & Harris, B.(2018). Technology facilitated coercive control: Domestic violence and the competing roles of digital media platforms. *Feminist Media Studies*, 18(4), 609-625.

Elizabeth, V.(2015). From domestic violence to coercive control:

- Towards the recognition of oppressive intimacy in the Family Court. *New Zealand Sociology*, 30(2), 26-43.
- Feldman, R. & Sanger, J.(2006).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ffiths, T. L. & Steyvers, M.(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28-5235.
- Grimmer, J. & Stewart, B. M.(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Johnson, L., Chen, Y., Stylianou, A. & Adams, A. E.(2022). Examining the impact of economic abuse on surviv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2, 1014.
- Kim, J. & Gray, K. A.(2008). Leave or stay? Battered women's decision after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10), 1465-1482.
- Littwin, A.(2012). Coerced debt: The role of consumer credit in domestic violence. *California Law Review*, 100(4), 951-1026.
- Malik, V., Sanjay, R., Nigam, S. K., Ghosh, K., Guha, S. K., Bhattacharya, A. & Modi, A.(2021). ILDC for CJPE: Indian legal documents corpus for court judgment prediction and explanation. In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11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1: Long Papers)* (pp. 4046-4062).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Mellar, B. M., Fanslow, J. L., Gulliver, P. J. & McIntosh, T. K. D.(2024). Economic abuse by an intimate partner and its associations with women's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9(19-20), 4072-4099.
- Miller, S. L. & Smolter, N. L.(2011). "Paper abuse": When all else fails, batterers use procedural stalking. *Violence Against Women*, 17(5), 637-650.

- Milne, S., Maury, S. & Gulliver, P.(2018). *Economic abuse in New Zealand: Towards an understanding and response*. Good Shepherd Australia New Zealand.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24, June 24). *High Commissioner: Economic violence against women is “gender-based violence in one of its insidious forms”* [Statement]. Geneva: OHCHR.
- Pence, E. & Paymar, M.(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The Duluth model*.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ostmus, J. L., Hoge, G. L., Breckenridge, J., Sharp-Jeffs, N. & Chung, D.(2020). Economic abuse as an invisible form of domestic violence: A multicountry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1(2), 261-283.
- Postmus, J. L., Plummer, S. B. & Stylianou, A. M.(2016). Measuring economic abuse in the lives of survivors: Revising the Scale of Economic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22(6), 692-703.
- Sharp-Jeffs, N.(2015). *Money matters: Research into the extent and nature of financial abuse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n the UK*. London: The Co-operative Bank/Refuge.
- Stark, E.(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ylianou, A. M.(2018). Economic abuse with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Violence and Victims*, 33(1), 3-22.
- Stylianou, A. M., Postmus, J. L. & McMahon, S.(2013). Measuring abusive behaviors: Is economic abuse a unique form of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16), 3186-3204.
- Toews, M. L. & Bermea, A. M.(2017). “I was naive in thinking, ‘I divorced this man, he is out of my life’”: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post-separation power and control tactics experienced by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4), 2166-2189.
- World Health Organization &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2012).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Intimate*

partner violence (WHO/RHR/12.36). Geneva: WHO.

서울경제(2024.01.11.). “‘장인한테 나체 사진 보낸다’...성인방송 강요해 아내 숨지게 한 전직 군인 남편의 만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1JUSIKS>에서 2026.01.30. 인출

한국일보(2024.07.16.). “40억 피해 유튜브 썸양이 소환한 연인 간 ‘경제 착취’의 심각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421400003750>에서 2026.01.30. 인출.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n.d.). Financial abuse in the context of domestic & family violence. Retrieved from <https://www.commbank.com.au/support/financial-abuse.html>에서 2026.1.30. 인출.

Domestic Abuse Act 2021, c. 17 (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1/17/contents/enacted>에서 2026.01.30. 인출.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017). Glossary of definitions of rape, femicid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ige.europa.eu/publications/glossary-definitions-rape-femicide-and-intimate-partner-violence>에서 2026.01.30. 인출.

Government of Canada. (n.d.). Economic abuse. Canada.ca. <https://www.canada.ca/en/women-gender-equality/gender-based-violence/economic-abuse.html>에서 2026.01.30. 인출.

SOS violence conjugale. (n.d). 6 forms of financial violence. <https://sosviolenceconjugale.ca/en/articles/6-forms-of-financial-violence>에서 2026.01.30. 인출.

Surviving Economic Abuse. (n.d.). What is economic abuse? <https://survivingeconomicabuse.org/what-is-economic-abuse/>에서 2026.01.30. 인출.

UN Women. (n.d.). Frequently asked questions: Type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qs/types-of-violence>에서 2026.01.30. 인출.

Violence Against Women Act Reauthorization Act of 2022, 34 U.S.C. § 1229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34-section12291>에서 2026.01.30. 인출.

Abstract

Typology and Evolution of Economic Abuse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A Topic Modeling Analysis of Court Judgments

Joon Sung Kwon^{*}, Min Kyung Ha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atterns of economic abuse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se patterns evolve across repeated victimiza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284 first-instance court decisions involv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that included elements of economic abuse, all adjudicated in 2023. To capture the contextual nuances and latent typologies of abuse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through conventional quantitative indicators, a text-mining based topic modeling approach was employed. In addition, repeated incidents involving the same perpetrator-victim dyads were tracked across the first, second, and third occurrences to analyze sequential variations over time. The analysis identified seven distinct types of economic abuse in first incidents, with the number of topics converging to five in second incidents and four in third incidents as repeat victimization progressed. Meanwhile, topic coherence scores increased steadily, indicating that abusive behaviors became increasingly refined and patterned over time.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patial context of abuse shifted from primarily physical settings to online and hybrid environments. Second, digital intrusion tactics exploiting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intimate relationships exhibited adaptive patterns of differentiation and regression. Third, by the third incident, hybrid online-offline stalking and more deliberate, premeditated offenses emerged as new strategies. Fourth, the targets of threats gradually expanded from the victim's acquaintances to unspecified third parties, with reinforced strategies to isolate victims from society.

^{*} First Author: Assistant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Criminology,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se findings illustrate the “paradox of intimacy,” whereby information and spaces shared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are transformed into instruments of abuse once the relationship becomes violent, with digital technologies serving as a key mechanism that amplifies coercive control.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independence support systems that facilitate victims’ exit from abusive relationships, enhance frontline investigative responses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of invisible forms of abuse, and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to address hybrid online-offline forms of coercive control.

Keywords : Intimate Partner Violence, Repeat Victimization, Domestic Violence, Dating Violence, Economic Abuse, Stalking, Topic Modeling